

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확인서

승인번호	교육부고시 제2025-217호
신청 내용	① 지역협업위원회명: 대구·경북 지역협업위원회
	② 전담 기관 및 참여 기관 ○ 전담기관: 대구·경북지역혁신플랫폼, 대구라이즈센터, 경북라이즈센터 ○ 참여기관: 경북대, 국립경국대, 대구한의대, 한동대
	③ 주요 규제특례 신청 내용: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등

지정 사항	○ 특화지역 지정 목적 및 기간 - (목적) 지자체-대학-지역혁신기관 및 지역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 - (기간) 2025.6.9. ~ 2029.6.8. (4년간) ○ 특화지역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, 기간 및 범위,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		
	규제특례 내용	적용대상 (고등교육기관)	적용기간
	①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: 실습기관이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이거나, 중앙부처·지자체가 선정·관리하여 표준현장실습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글로벌대학 추진과제 관련 기관(산업체 등)에 한해 지원비율 확대 규제특례 부여 < 특례운영 시 고려사항 > · 정부재정지원의 지원비 지급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목을 뜻함 가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원 바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	국립경국대, 대구한의대, 한동대	'25.6.9. ~ '29.6.8.
	② 단일교지 요건 완화 : 글로벌대학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캠퍼스에 한해 교자·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* 대구한의대(영덕캠퍼스,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/ 청도캠퍼스, 청도평생학습행복관), 한동대(경주캠퍼스, 영덕캠퍼스, 울진캠퍼스, 울릉캠퍼스)	대구한의대, 한동대	
③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: 해당 국립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 대상 일반연구비, 정책연구비 지급 허용 규제특례 부여 < 특례운영 시 고려사항 > · 대학의 혁신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력 향상과 연구 내용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	경북대		

2025년 6월 9일
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(인)

